

# NEWSLETTER 949

Feb 28, 2024

##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 행정예고 - 잠정조치 적용 연장 필요에 따른 부과기간 2개월 연장 -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하여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 적용기간 연장 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정 이유 및 법적 근거

-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잠정조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잠정조치의 적용)

-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프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②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덤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④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 2.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41호(2023.11.15. 시행)로 2023.11.15. ~ 2024.3.14. 4개월의 기간 동안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덤프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방지 등 고려 시 잠정조치 적용기간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부과 기간을 2023.11.15. ~ 2024.5.14.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 II. 부과 내용

### 1. 부과대상 공급국

- 이집트

### 2. 부과대상 물품

-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
-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2523.21-0000

### 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이집트	로얄시멘트(Royal El Minya Cement Co.)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2.23%
	그 밖의 공급자	72.23%

### 4. 부과기간

- (당초) 2023.11.15 ~ 2024.03.14. (4개월)
- (변경) 2023.11.15 ~ 2024.05.14. (6개월)

## III. 의견 제출

### 1. 제출 기한

- 2024년 3월 7일

### 2.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제출처

- 주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044-215-4432 / 팩스: 044-215-8076
- 이메일: michael80@korea.kr

##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기획재정부공고제2024-45호(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 행정예고)
- [붙임2]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행정예고)
- [붙임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백시멘트 잠정 기간연장)
- [붙임4] 조문별제개정이유서(이집트산 백시멘트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 I Contact



김동주 관세사 / Director

T 070-4353-1587  
E djkim@esein.co.kr



노규현 관세사 / Manager

T 070-4353-6972  
E ghnoh@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